



2021.9.28. 국무회의의 의결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반영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0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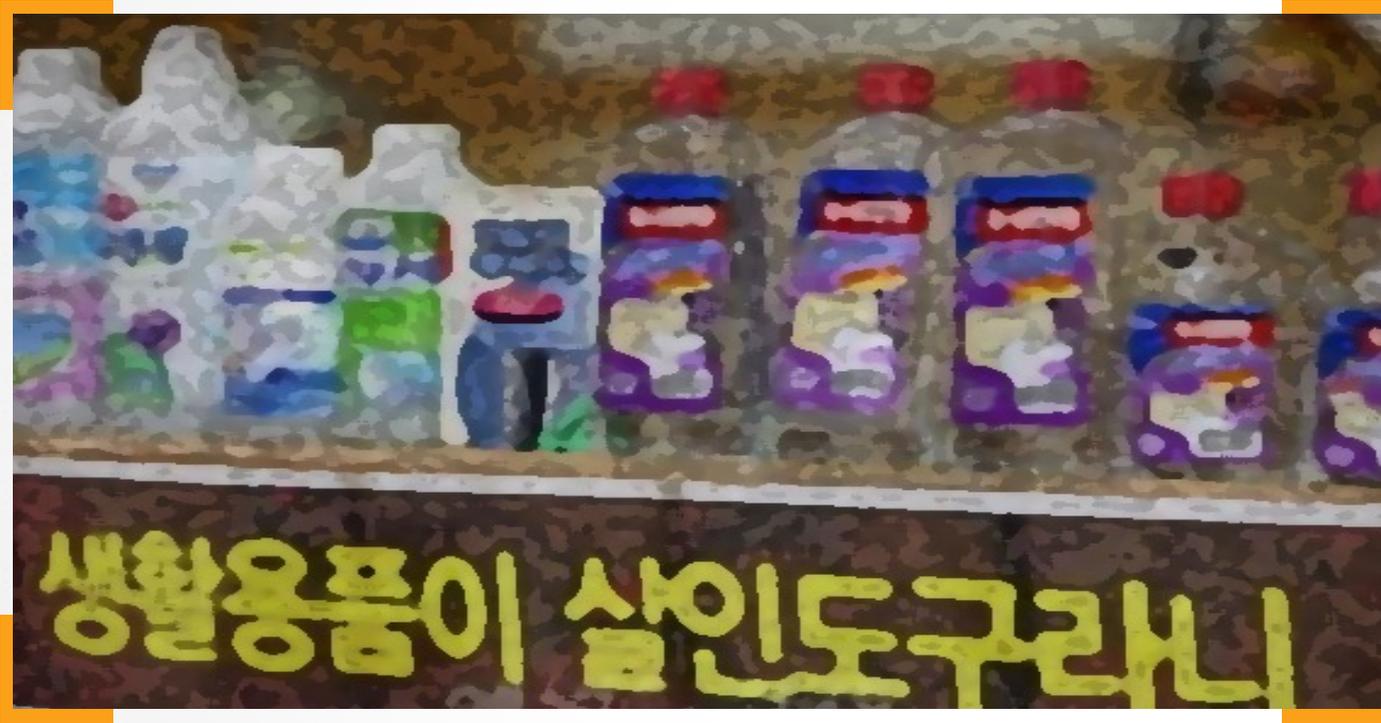
 2014.4.16. 세월호 참사



승객 304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 발생,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할 근거법령 미비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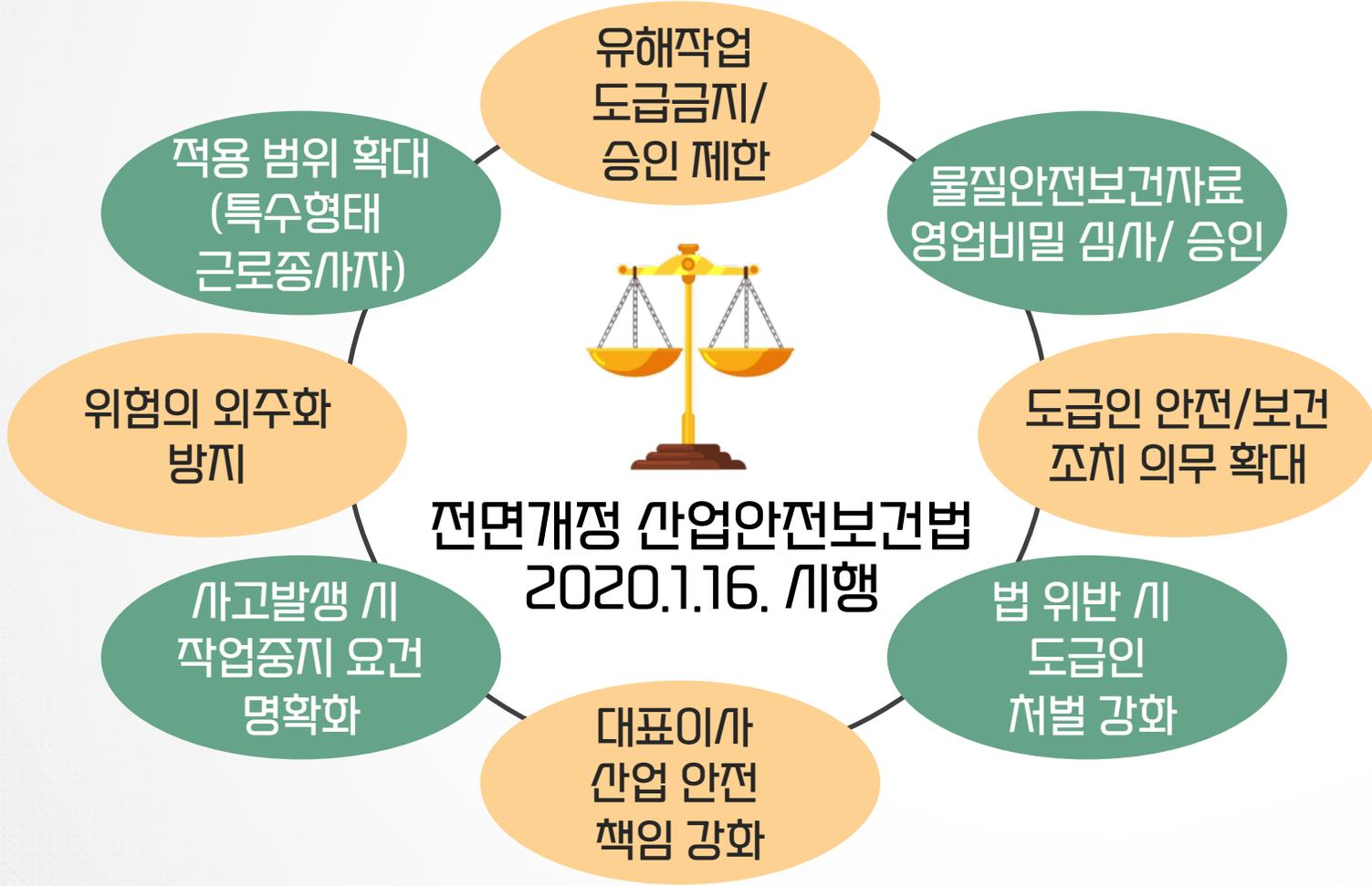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건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몸과 머리가 분리된 채 발견**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김용균법) 시행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김용균법) 시행



**김용균씨 사건을 발단으로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H중공업 하청 근로자 아르곤 누출 질식 사건

C사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사망 사건

인천 송도국제도시 49층 유리창 청소 중 20대 청년 추락사

H중공업 하청 근로자 굴착기 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

**특히,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 종사자들에게 발생**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2021.1.8.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본회 통과,
2021.1.26 제정 1년 뒤 시행**

1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사업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령의 미비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3

근로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 확보도 필요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2021.1.8.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본회 통과,
2021.1.26 제정 1년 뒤 시행



2021.1.2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국무회의의 의결되어, 구체화 되었으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

중대재해의 심각성과 예방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중대재해 구분	<p>〈중대산업재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사망자 1명 이상②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발생③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p>〈중대시민재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사망자 1명 이상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재해예방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정 명령의 이행에 관한 조치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항목	주요 내용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② 원청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한정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②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처벌수위(개인) 〈직접 고용 및 원하청 관계 동일〉	<p>①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p> <p>② 사망 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p> <p>*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p> <p>* 안전보건교육 수강 (미이행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p>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처벌수위 (법인 양벌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사망 : 50억 원 이하 벌금② 사망 외 :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예외* 배상액에 대한 법원의 고려사항 구체적 명시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적용 제외	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 한정) ② 중대시민재해는 소상공인,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손해액 5배 이하의 배상 책임 (상당한 주의 감독 시 예외)
시행(유예)	* 공포 1년 후 시행_2022.1. 27 시행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공포 2024. 1. 27시행)

0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유 (제1조)

산업재해

-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시민재해

- 가슴기 살균제 사건
- 4·16 세월호 사건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유 (제1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재해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유 (제1조)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해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유 (제1조)

중대재해처벌법제1조

- ①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운영,
- ②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정의 (제2조)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민재해

①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②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제2조, 제3조, 부칙 제1조)

☑ 적용범위

중대산업재해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시민재해

-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제조·관리상의 결함의
경우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설치·관리상의 결함의
경우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제2조, 제3조, 부칙 제1조)

☑ 적용범위

원칙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_ 2022.1. 27 시행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_ 2024.1. 27 시행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 제5조, 제9조)

중대산업재해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②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 제5조, 제9조)

중대시민재해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②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의무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의무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 제5조, 제9조)

중대산업재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대통령령)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산안법상 위반 시 과태료)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대통령령)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 제5조, 제9조)

중대시민재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대통령령)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산안법상 위반 시 과태료)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대통령령)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처벌조항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경영책임자 등	법인*	경영책임자 등	법인*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50억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50억원 이하 벌금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수 부상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다수 질병자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처벌조항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경영책임자 등	법인*	경영책임자 등	법인*
가중	½ 가중 (위 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	.	.	.

*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 (제1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짐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 (제15조)

☑ 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 법인,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 (제15조)

☑ 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5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 법인,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 법인,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0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 산업안전보건 체계 관련

법조항	내용	위반 시 제재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15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 산업안전보건 체제 관련

법조항	내용	위반 시 제재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작업반장, 생산과장·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	500만 원 이하 과태료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 산업안전보건 체제 관련

법조항	내용	위반 시 제재
제24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25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 관리조직, 안전보건교육,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	500만 원 이하 과태료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 안전보건 조치 관련

법조항	내용	위반 시 제재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해야 함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직무 미실시로 인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 안전보건 조치 관련

법조항	내용	위반 시 제재
제38조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기계·기구, 설비 위험 방지<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레스·리프트·크레인·동근톱 등 방호조치■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 안전보건 조치 관련

법조항	내용	위반 시 제재
제38조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붕괴·낙하·비래 위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 굴착·하역·벌목·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 안전보건 조치 관련

법조항	내용	위반 시 제재
제39조 (보건상의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 안전보건 조치 관련

법조항	내용	위반 시 제재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63조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64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 기타 사항

법조항	내용	위반 시 제재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 사망 시: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고용노동부 관할지청) -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관할지청에 1달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보고: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 기타 사항

법조항	내용	위반 시 제재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 기타 사항

법조항	내용	위반 시 제재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6개월~2년에 1회) ■ 배치전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처벌대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결과 발생 불문)
종사자 이용자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영책임자 등(대표이사 등)	의무 주체	사업주
개인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형사처벌 대상	행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공장장, 지사장 등) 법인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위탁, 용역 등	제3자 보호대상		도급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형사처벌 수준 (행위자 기준)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 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배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		.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안전보건조치 범위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 도급, 용역, 위탁 등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예 건설공사, 통신사 통신설비 유지보수

중대시민재해

-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
-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

예 유통업체의 제조물 판매, 소유건물 관리 위탁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안전보건조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 건설공사발주자 제외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안전보건조치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여러 차례 도급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수급인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

중대시민재해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안전보건조치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 관계수급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 제공
 -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0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사항

1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령임

- 즉,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조치를 이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사항

2 안전보건 확보의무

(국무회의의에서 의결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4조, 제5조)

-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관련 (9가지)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 전담조직의 설치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반기회 이상)
 - 매년 적정 예산편성 (인력,시설,장비 등) 및 집행 관리 체계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 안전보건관리자 등 정해진 수 이상 배치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사항

2 안전보건 확보의무

(국무회의의에서 의결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4조, 제5조)

-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관련 (9가지)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 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반기 1회 이상)
 -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 도급,용역, 위탁 시 적격수급인 확인 등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사항

2 안전보건 확보의무

(국무회의의에서 의결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4조, 제5조)

- 제5조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련 (4가지)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결과 보고 받을 것(반기 1회 이상)
 -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해 필요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점검
 - 점검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이행지시, 예산확보 등 조치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 1호, 시행령(안) 제4조)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매년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하는 전사안전 보건계획 상 내용과 중첩

전담조직의 설치 (상기 근로자 500인 이상)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야 함
- 다만, 산업의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도가 낮아 법 상 확보하여야 할 기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이 2명 이하인 경우는 예외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 1호, 시행령(안) 제4조)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반기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관련 지침 마련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관리감독자의 직무임)
- 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참고 필요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 1호, 시행령(안) 제4조)

매년 적정 예산편성 (인력,시설,장비 등) 및 집행 관리 체계 마련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 위험 요인의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체계 마련
- 매년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하는 전사안전보건계획 상 내용과 중첩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 1호, 시행령(안) 제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직무수행을 위한 전결권 부여
- 인사평가 등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수행여부 확인 등 지표 삽입

안전보건관리자 등 정해진 수 이상 배치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확인 후 선임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 1호, 시행령(안) 제4조)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 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반기 1회 이상)

- 의견청취방식 제한 없음
- 산안위,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 가능
- 산안위, 안전보건협의체에게 최소 반기 1회는 종사자 의견 논의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 1호, 시행령(안) 제4조)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 급박 위험시 대응절차마련
 -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 발생 시 절차마련
 -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
 - 현장 작동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점검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 1호, 시행령(안) 제4조)

도급,용역, 위탁 시 적격수급인 확인 등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수급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 수급사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 계약부서 주안점
 - 계약대상 안전보건 조항, 수급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선정기준(평가표) 마련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사항

☑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 4호, 시행령(안)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결과 보고 받을 것
(반기 1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위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전문 기관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기관에 위탁 가능함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사항

☑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 4호, 시행령(안) 제5조)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해 필요 조치

- 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 및 집행 등 필요조치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사항

☑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 4호, 시행령(안)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점검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산안법 상 특별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점검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이행지시, 예산확보 등 조치

-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교육 이행 지시, 관련예산 확보 등 조치

05.
Q&A



Q₁.

**중대재해처벌법의 수규자인
"경영책임자 등"과 관련하여
안전담당자가 선임이 가능한지?**

Q₂.

**행위자가 동일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경합되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Q₃.

중대재해발생시 **수사 주체**는
어느 기관인지(노동부 or 경찰)?

Q₄.

**전담조직(시행령 제4조 제2호)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Q.5.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적법하게 운영한다면
종사자 의견청취(시행령 제4조 제7호)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